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 사업대상자: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사업비: 600,000천원(보조 360,000천원, 자부담 240,000천원)
 - 지원보조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 단,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지원내용: 산지가공시설 1개소, 기존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설립**
 - (1) 건물 및 시설: 가공공장(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 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시설)
- 부자매입비 및 기타 가공시설에 직접적 연관이 미미한 시설(판매시설 연구실, 사무실 등) 지원 제외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 초과 불가

. 건축공사(소방,전기 등 공사비 포함)의 경우 사업비 지원한도는 공장 1백만원/㎡, 근린생활시설(500㎡ 이하 수산물 제조업) 1.7백만원/㎡ 원칙임(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함).

(2) 기존 산지가공시설에 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도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 (2)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HACCP시스템 지정을 위해 1회이상 신청의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를 득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 설립 후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이상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단, 수협은 제외

○ 어업법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한 기존 지원 이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단, 사업 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건축물은 2015년 이후, 시설장비는 2020년 이후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구성원, 법인구성원에서 개인사업자 변경의 경우도 해당

○ 하나의 주소지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됨.(2023년~2025년 사업 포기자도 적용하여 사업 지원제한)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3. 접수 및 제출서류

“붙임 서식 활용 할 것”

- 접수기간: 2026. 1. 29.(목) ~ 2026. 2. 20.(금)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2026. 2. 20.(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공통사항】

- (1) 공고 상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 등록증(신고필증) 등
- (2)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1부
- (3)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1부
- (4) 사업계획서(서식 3, 3-1) 1부
- (5) 법인(단체)인 경우, 단체 소개서(서식 4) 및 정관 1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조합원 명부, “해당사업 신청” 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1부.
 - * 아래 법인 추가서류 확인 필요
-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5) 1부
- (7)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6) 1부
 - 어업법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약약서 (서식 7) 1부 * 공고 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8)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9) 토지 등기부등본 등 시설부지 확보 증명서, 시설부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
 - * 임대 사용 시, 토지(대지) 사용 승낙(임대차계약서)서 첨부
- (10) 설계내역서(기본 설계도면), 견적서 등 산출내역 세부자료 1부
 - * 타인내역서(견적서) 포함 1부
- (11) 사업목적 자부담금 확보증명서(은행발급, 은행잔액증명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증빙서류 1부
- (12)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부
- (13) 공장입지기준확인서(건축 연면적 500㎡ 이상일 시) 1부
- (14)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는 증빙서류 1부
 -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서류 1부 (법인

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출자금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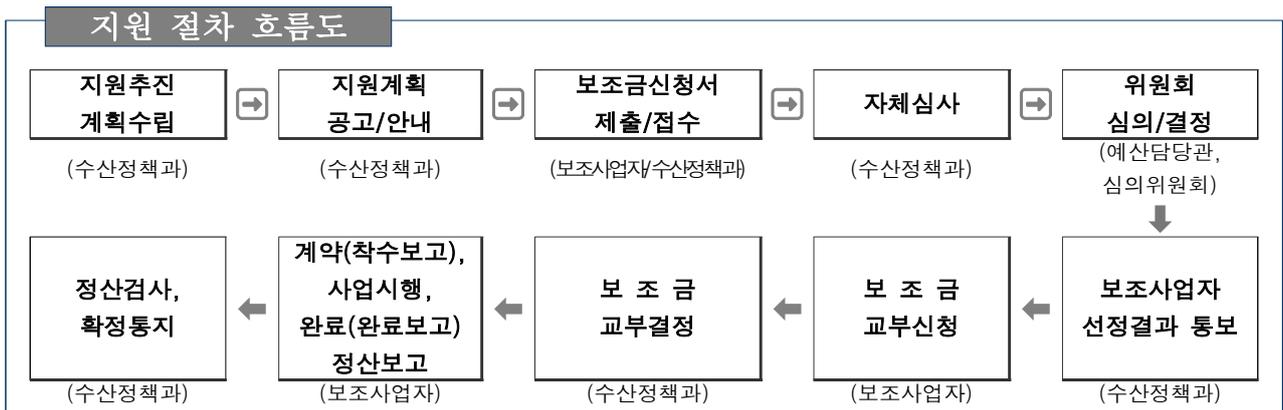
-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조합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서 1부(참석자 명단 포함) 1부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신청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 신청자 부담으로 함

4. 심사 및 통보

- 부서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8)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서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0]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보조금 사업명: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공통사항		
1	공고 상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 등록증(신고필증)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사업계획서(서식 2, 2-1)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단체소개서(서식 3),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이사회 의결서* 등 * 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어업법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 (서식 6)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① 토지 등기부등본 등 시설부지 확보 증명서 ② 시설부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 * 임대 사용 시, 토지(대지) 사용 승낙(임대차계약서)서 첨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설계내역서(기본도면), 견적서(타행 내역·견적)등 산출내역 세부자료, 현장사진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2026년도 예산서 또는 은행 잔액증명서 등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3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채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4	지방세 납세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5	공장입지기준확인서(건축 연면적 500㎡ 이상일 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는 증빙서류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 서류 1부 (법인 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출자금 증빙서류)	
	-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조합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서 1부(참석자 명단 포함) 1부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재지	(우편번호: -)	회원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업명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 12. 31.
- 사업내용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톤)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예시)	(예시)	
2026. 3.	○ 보조금 교부 신청	
2026. 3.	○ 입찰실시(조달청 등)	
2026. 4.	○ 도급계약 및 착수	
2026. 4.~12.	○ 사업시행 및 완료	
2026. 12.	○ 정산보고	

□ 보조사업의 효과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설립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시설비	20,000	.건축공사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전기공사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기계설비 공사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시설비	20,000	.건축공사 1식 * 총사업비 * 40% = 천원 .전기공사 1식 * 총사업비 * 40% = 천원 .기계설비 공사 1식 * 총사업비 * 4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2-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 사업자 정보	○ 업체명(대표자) ○ 연락처				
2. 사업위치	○ 상세주소 작성				
3. 사업규모	○ 면적 : 부지 m ² , 연면적 m ² ○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M/T ○ 주요시설 :				
4. 사업내용	○ 세부내용 작성				
5. 사업비	총 천원 (보조 자담)				
6. 지원조건	보조 %, 자담 %				
7. 추진 일정(계획)	※ 예시 ○ 실시설계용역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착수 및 보고 년 월 일 ○ 사업준공 년 월 일 - 년 월 일				
8. 필요성 및 기대효과	○				
8. 부지확보여부	○				
9.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6부터는 계획	'22	'23	'24	'25	'26
10.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26부터는 계획	'22	'23	'24	'25	'26

11. 종업원수 (단위 : 명) ※'26부터는 계획	'22	'23	'24	'25	'26
12. 자산(자본금 등) 규모 (단위 : 천원)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13. 특허, 신기술 등 보유유무	○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14. 입지여건	○				
15. 첨부자료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시설비	20,000	건축공사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시설비	20,000	건축공사 1식 * 총사업비 * 4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서식 4>

단체 소개서

[단체명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 팩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자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수익(%), 기타(%) 		
주요사업 (최근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6】 신청인이 어업법인일 경우 작성·제출 (신청법인 및 법인구성원 모두 서명)

확 약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26년 2월 현재)

신청 어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2026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지원받은 년 도	지원받을 당시 업체명(대표자) (법인, 개인 등 기재)	지원받은 내역 (건축물, 시설 등)	총사업비 (천원)	비고
년				
년				
년				
년				

※ 지원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신규로 신청하는 법인에 속해있으면 당초 지원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 및 지원제한

상기 어업법인(법인 단체구성원 포함)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였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지원을 받았던 동일 사업의 사후관리기간(건축물의 경우 10년, 시설·장비의 경우 5년)이 지났음을 확약하며,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2. .

확약업체 : (직인)
 확약인 1 : (인)
 확약인 2 : (인)
 확약인 3 : (인)
 확약인 4 : (인)
 확약인 5 : (인)